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1. 23 선고 2022나2885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현교

변 론 종 결 2022. 11. 2.

판 결 선 고 2022. 11. 23.

제1 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6. 23. 선고 2021가단101988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가. 서울 광진구 K, F에 있는 G건물 L호에 관하여 2017. 5. 23.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위 G건물 N호에 관하여 2017. 5. 23.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B에게

가. 서울 광진구 K, F에 있는 G건물 L호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 2017. 5. 23. 접수

제5828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위 G건물 N호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 2017. 5. 23. 접수 제5828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당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원고는, 다음 나.항과 같은 법리에 의할 때 원고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광주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 소속 공무원이 피고와 채무자인 B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모두 열람한 2020. 11. 13.이고, 이 사건 소는 그 날부터 1년을 지나기 전인 2021. 1. 15. 제기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 그런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체납자의 재산 처분에 관한 등기·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그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해행위의 요소 중 일부씩만을 알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공무원이 소속된 국가가 사해행위의 존재와 사해의사를 인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다200347 판결).

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5. 2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을 2017. 8.경 알고 있었다는 사실은 원고도 인정하고 있고, 갑 제1,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B 소유이던 서울 광진구 K, F에 있는 G건물 H호에 관하여 2016. 9. 30. 처분청 성동세무서, 2016. 11. 22. 처분청 성동세무서로 하는 각 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이러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후 2017. 8. 2. 관리번호 I로 개시된 공매에서의 최종 매각금액은 73,200,000원에 불과한 사실, 그런데 위 매각대금 납부기한 전에 이미 위 H호에 관하여는 2017. 8. 4. 처분청 순천세무서, 2018. 1. 15. 권리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2018. 2. 5. 권리자 광양시, 2018. 2. 9. 처분청 서대문세무서로 하는 각 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그 매각금액으로 원고가 일부 변제받고도 이 사건 제소 당시 이미 납부기한이 도래한 B의 체납세액이 합계 302,985,42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광주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 소속 공무원을 포함하여 B에 대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 역시 아무리 늦어도 J이 위 매각금액을 납부하여 위 H호에 관하여 2018. 4. 10.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원고 산하 처분청인 성동세무서 등의 압류등기가 전부 말소된 2018. 4. 13. 무렵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처분행위로 인하여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채무자 B의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고, B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그로부터 1년이 지나서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남천, 판사 박태안, 판사 윤경아